

「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및 안전점검 수행기관」 모집 공고

「건설기술진흥법」 제62조(건설공사의 안전관리), 동법 시행령 제98조(안전관리 계획의 수립) 및 제100조의2(안전점검 대상 및 수행기관 지정 방법 등)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및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 작성을 위해 아래와 같이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모집공고 합니다.

2021. 11. 01.

마 포 구 청



1. 공고기간: 2021. 11. 01.(월) ~ 11. 22.(월)

2. 참가자격

- 가. 「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제28조 규정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[건축 또는 종합분야(건축분야 포함)]
- 나. 법인등기부 상 본점이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기관

3. 수행항목 및 대상

가. 안전관리계획서 검토

- 서울특별시 마포구에서 시행 및 인·허가되는 건설공사 중 「건설기술 진흥법」 제62조 및 동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

나. 건설공사 안전점검(정기안전점검, 정밀안전점검, 초기점검, 공사재개안전점검)

- 서울특별시 마포구에서 시행 및 인·허가되는 건설공사 중 「건설기술 진흥법」 제62조 및 동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한 건설공사

4. 접수기간 및 방법

가. 접수기간: 2021. 11. 01.(월) ~ 11. 22.(월) 18:00

나. 접 수 처: 마포구청 건축과(담당 김민재, ☎02-3153-9444)

다. 제출서류

- 1)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 신청서 및 등록부 각 1부
- 2)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 및 법인등기부 각 1부
- 3) 등록분야별 기술인력 및 장비의 보유현황과 기술인력의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각 1부
- 4) 정기안전점검 등 수행실적 및 수행기관의 신용도를 증명하는 서류 각 1부

라. 접수방법: 등기우편, 방문접수, 이메일(E-mail) 접수

- 1) 등기우편: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 마포구청 3층 건축과
- 2) 이 메 일: minjael633@mapo.go.kr

마. 수행기관 모집 수: 20개 업체 이내

5. 안전점검 수행기관 공고 일정

절 차	일 정	내 용
수행기관 모집공고	2021. 11. 01.(월)	▪ 마포구 홈페이지 모집공고
수행기관 등록신청서 제출 및 서류접수	2021. 11. 01.(월) ~ 11. 22.(월)	▪ 등기우편, 방문접수, 이메일 접수 ※ 신청마감일 내 마포구청 도달분만 유효 하오니 가급적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접수서류 검토	2021. 11. 23.(화) ~ 11. 29.(월)	▪ 제출서류 적합 및 사실관계 여부 등 확인 ▪ 공사규모 및 종류별 안전점검 수행기관이 실시한 정기안전점검 등의 수행실적 및 수행기관의 신용도 등을 차등하여 모집
수행기관 명부 공개	2021. 11. 30.(화)	▪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 공개 (마포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게시)

6. 기타사항

가.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및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임기는 등록명부 공개일로부터 1년으로 합니다.

나.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, 제출하신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무효 처리 합니다.

다. 신청마감일 내 마포구청 도달분만 유효하오니 가급적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
바라며, 신청서 제출 후 제출결과를 필히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
인한 불이익 및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습니다.

라. 추진일정은 추진사항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마. 수행기관 선정결과는 마포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게시되며, 기관별로
개별통지하지 아니하오니 반드시 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바. 기타 상세한 내용은 마포구청 건축과(담당 김민재, ☎ 02-3153-9444)로
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붙임 1.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 신청서 1부.
2.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부 1부.

[붙임 1]

■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[별지 제7호서식]

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 신청서

※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, []에는 해당하는 곳에 √표를 합니다. 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자	처리기간	공고마감후 15일
------	------	------	-----------

신청인	상호		
	대표자	생년월일	성별
	사무소 소재지	전화번호	

신청분야	토목분야 [] 건축분야 [] 종합분야 []
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「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」 제100조의2조제1항 및 「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」 제18조제4항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등록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발주청 (인·허가기관의 장) 귀하

신청인 (대표자) 제출서류	1. 안전진단전문기관등록증	수수료 없음
	2. 등록분야별 기술인력 및 장비의 보유현황과 그 기술인력에 관한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각 1부	
	3.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정기안전점검 등 수행실적 및 수행기관의 신용도를 증명하는 서류 각 1부	
	4. 기타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이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명부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서류 각 1부	

처리절차

신청서 작성	→	접수	→	첨부서류 검토	→	기안·결재	→	등록결과 통보
--------	---	----	---	---------	---	-------	---	---------

신고인

처리기관(발주청 또는 인·허가기관)

210mm×297mm[백상지(80g/㎡) 또는 중질지(80g/㎡)]

[붙임2]

■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[별지 제8호서식]

(3쪽 중 제1쪽)

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부

전문분야(세부분야)		()		등록번호					
상호 또는 법인명				성명 (대표자)					
소속 국가명				등록일					
사무실	소재지	(전화)		확보 구분					
	순사무실 면적	㎡		입주 연월일					
자본금 (필요시)	납입자본금		변경 연월일		실질자본금				
	· 금액 · 외국인 투자율 · 외국인 투자금액								
장비 보유 현황									
취득일	품명	규격	수량	처분일	취득일	품명	규격	수량	처분일
상훈(필요시)									
연월일	종류	상훈기관		공적 내용		용역명(필요시)		비고	
제재									
연월일	종류	제재기관		사유 및 기간		용역명(필요시)		비고	

기술인 현황

기록 변경사항